

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
의안번호	5064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6.  
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  
 (학교지원과)

1. 제출사유

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.

2. 제출근거

-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o 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 제6호

3. 주요내용

- o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(취득)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연번	건명	소재지	면적	취득금액	취득시기	주관부서
1	대구노변초 교실 증축	수성구 노변공원로 52	건물 1,152	2,619,760	2019. 12.	교육시설 1과
2	유아교육진흥원 강당 증축	달서구 학산남로 50	건물 1,107	2,906,049	2019. 6.	교육시설 2과
합 계			건물 2,259	5,525,809		

4. 계획안 : 붙임

- 붙임 1.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부.  
 2. 비용추계서 1부.  
 3. 관계법령 1부.  
 4. 배치도 1부.

[붙임1]

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
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총괄표

대구광역시교육청

(금액단위 : 천원)

재산의 구 분	취 득				처 분				비고
	계		매입		계		매각/철거/교환	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
1. 토 지 (㎡)									
기 존	0	0	0	0	0	0	0	0	
변 경	0	0	0	0	0	0	0	0	
증(△)감	0	0	0	0	0	0	0	0	
2. 건 물 (㎡)									
기 존	17,108	39,306,910	17,108	39,306,910	0	0	0	0	
변 경	19,367	44,832,719	19,367	44,832,719	0	0	0	0	
증(△)감	2,259	5,525,809	2,259	5,525,809	0	0	0	0	
3. 공작물 (식)									
기 존	0	0	0	0	0	0	0	0	
변 경	0	0	0	0	0	0	0	0	
증(△)감	0	0	0	0	0	0	0	0	
4. 임목죽 (본)									
기 존	0	0	0	0	0	0	0	0	
변 경	0	0	0	0	0	0	0	0	
증(△)감	0	0	0	0	0	0	0	0	
총 계									
기 존	17,108	39,306,910	17,108	39,306,910	0	0	0	0	
변 경	19,367	44,832,719	19,367	44,832,719	0	0	0	0	
증(△)감	2,259	5,525,809	2,259	5,525,809	0	0	0	0	

## 2018년도 취득 재산의 표시 (제1차 변경계획안)

## 대구광역시교육청

연번	구분	소재지	구조	면적(㎡)	과표 또는 평가액(천원)	사유
1	증축	수성구 노변공원로 52	철근 콘크리트조	건물 1,152	2,619,760	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
2	증축	달서구 학산남로 50	철근 콘크리트조	건물 1,107	2,906,049	유아교육진흥원 강당 증축
합계				건물 2,259	5,525,809	

##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
## 1. 대구노변초 교실 증축

## 1. 사업목적

- 수성의료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

## 2. 사업개요

## 가. 사업근거

- 「학교증축 부담금 협약체결 알림」 (학교운영지원과-5197, 2015.7.17.)
- 「대구도시공사 수성의료지구 학교증축 부담금 납부 통지」 (대구도시공사 도시개발처-1292, 2016.3.21.)

나. 사업기간 : 2018년 5월 ~ 2019년 12월

## 다. 사업내용

소재지	구조	층수	준공예정	연면적	비고
수성구 노변공원로 52	철근콘크리 트조	2층	2019. 12.	1,152㎡	교실 8실, 화장실 3실, 계단실 (지상 3, 4층 및 옥탑)

라. 재원 : 기타이전수입 2,619,760천원(학교증축부담금 기부채납)

3.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8. 기정 예산	2018. 1차 추경 증(감)액	2019.				총예산액
		설계비	시설비	감리비	부대비	소계	
예산 (요구)액	-	102,948	2,469,969	37,820	9,023	2,516,812	2,619,760

**2. 유아교육진흥원 강당 증축**

1. 사업목적

o 우천, 혹한 혹서 등에도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 진행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 주민의 문화·체육활동 편의 제공

2. 사업개요

가. 사업근거

o 「다목적교실(강당) 증축 신청」 (대구달서공고-4742, 2018.4.5.)

나. 사업기간 : 2018년 5월 ~ 2019년 6월

다. 사업내용

소재지	구조	층수	준공예정	연면적	비고
달서구 학산남로 50	철근콘크리트조	3층	2019. 6.	1,107㎡	- 강당 987㎡ - 연결복도 120㎡ (기존 안전교육체험시설 위 증축)

라. 재원 : 중앙정부이전수입 2,906,049천원(보통교부금)

3.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8. 기정 예산	2018. 1차 추경 증(감)액				총예산액
		설계비	시설비	감리비	부대비	
예산 (요구)액	-	117,890	2,667,170	111,387	9,602	2,906,049

## [붙임2]

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
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 1. 비용수반요인

- 대구노변초 교실 증축 등 2개 사업에 따른 설계비, 시설비,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반영

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예산편성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
-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에 걸쳐 비용 산출

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금액단위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구분					
세입	○ 중앙정부이전수입	2,906,049	0	0	2,906,049
	○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	0	0	0	0
	○ 기타이전수입	2,619,760	0	0	2,619,760
	소계(a)	5,525,809	0	0	5,525,809
세출	○ 대구노변초 교실 증축	102,948	2,516,812	0	2,619,760
	○ 유아교육진흥원 강당 증축	2,906,049	0	0	2,906,049
	소계(b)	3,008,997	2,516,812	0	5,525,809
총 비용(a-b)		2,516,812	△2,516,812	0	0

## 4. 재원조달 방안

(금액단위: 천원)

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구분				
중앙정부이전수입	2,906,049	0	0	2,906,049
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	0	0	0	0
기타이전수입	2,619,760	0	0	2,619,760
합계	5,525,809	0	0	5,525,809

## 5. 부대의견 : 없음

## 6. 작성자 :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재산사학담당사무관 김충하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금액단위: 천원)

시 설 명	면적(㎡)	구분	1차(2018년)	2차(2019년)	3차(2020년)	합계
대구노변초 교실 증축	건물 1,152	소 계	102,948	2,516,812	0	2,619,760
		설계비	102,948	0	0	102,948
		시설비	0	2,469,969	0	2,469,969
		감리비	0	37,820	0	37,820
		부대비	0	9,023	0	9,023
유아교육진흥원 강당 증축	건물 1,107	소 계	2,906,049	0	0	2,906,049
		설계비	117,890	0	0	117,890
		시설비	2,667,170	0	0	2,667,170
		감리비	111,387	0	0	111,387
		부대비	9,602	0	0	9,602
합 계	건물 2,259	소 계	3,008,997	2,516,812	0	5,525,809
		설계비	220,838	0	0	220,838
		시설비	2,667,170	2,469,969	0	5,137,139
		감리비	111,387	37,820	0	149,207
		부대비	9,602	9,023	0	18,625

[붙임3]

관 계 법 령

■ 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
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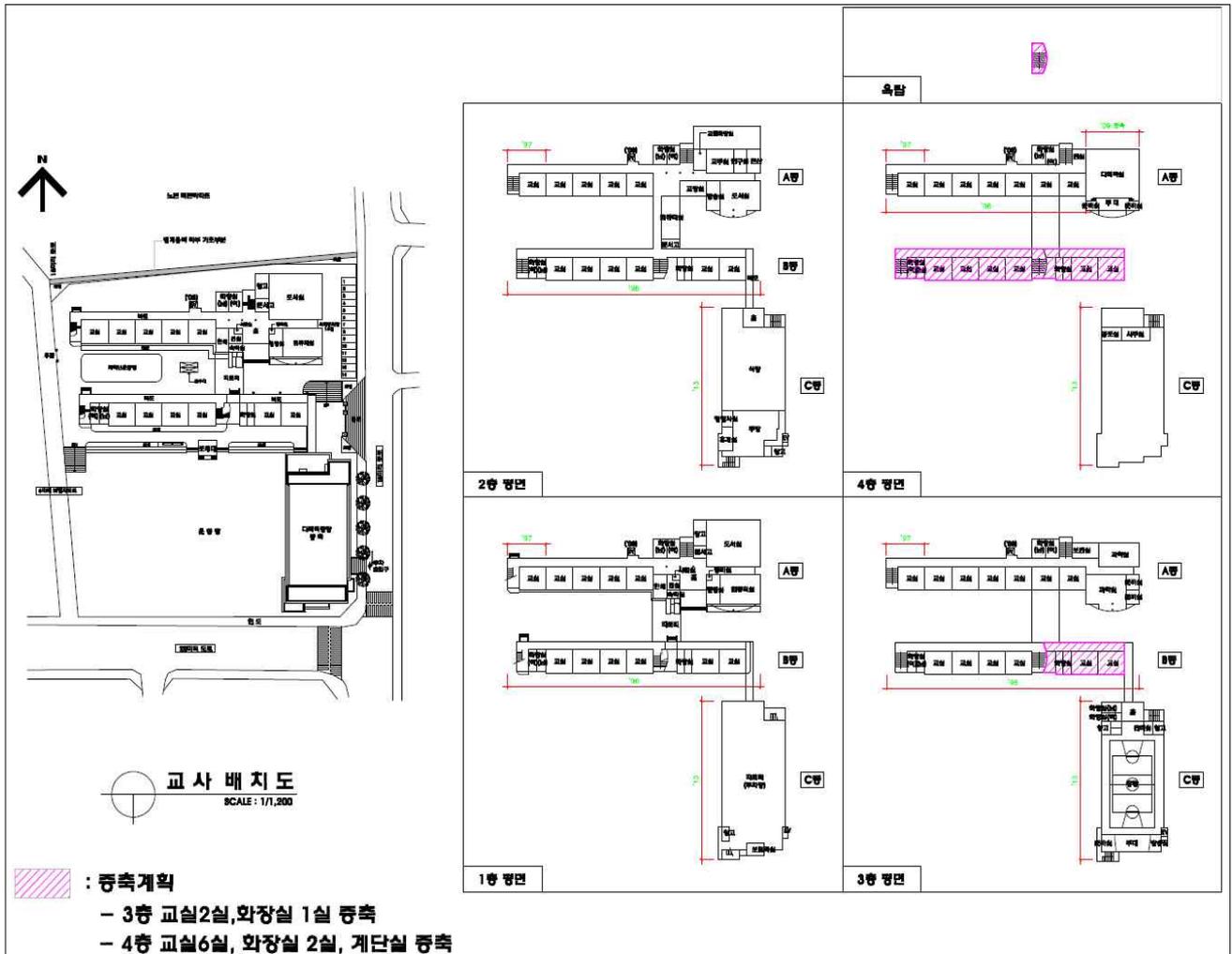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 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[붙임4]

배치도

□ 대구노변초 교실 증축 배치도



□ 유아교육진흥원 강당 증축 배치도

